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8
----------	------

제출일자 : 2018.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8553호, 시행 2018.4.19.)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
부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1항제2호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항목 신설(안 제2조의2)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항목에 “음식
판매자동차”를 신설 및 “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안 별표3)
-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과 “현수막”에 설치 개수 당 부과기준을
명확화(안 별표6)

-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서식 변경 등 안 별지 제2호 부터 제4호, 안 별지 제6호, 안 별지 제11호, 안 별지 제13호 부터 제15호까지 간단한 자구의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5. 11. ~ 5.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2018. 5. 2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1건)

- 의견내용 : 안 별지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 “현수막” 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에 따라 변경 필요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별표 3, 별표 6,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
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
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별표 3] (개정 2018.00.00.)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 이용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 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당)	10,000원 500원 3,000원	
다.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 1)과 같음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 ² 이하	3,000원
	- 연면적 1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1) 현수막	- 10m ² 이하	3,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m ² 이하	5,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2,500원
거. 전단(1,000매당)		2,5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2018.00.00.)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당 12만원 개당 17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5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92만원 개당 117만원 개당 130만원+가산금액 개당 7만원 개당 10만원 개당 13만원 개당 17만원 개당 25만원

- 1.7㎡ 이상 2.0㎡ 미만		개당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개당 50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 을 가산한 금액	개당 80만원+가산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장당 17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장당 35만원 장당 50만원 장당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을 가산한 금액	장당 80만원+가산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 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 신고필

기간 : _____

장소 : _____

달성군수

- 현 수 막 : 가로 10센티미터 X 세로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가로 5센티미터 X 세로 3.5센티미터 이내

※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옥외광고물 등 (☐ 안전점검 ☐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점검 -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2.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table><tr><th>광고물등의 종류</th><th>기준</th><th>수수료</th><th>비고</th></tr><tr><td>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td><td>-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신설)</td><td>400,000원 10,000원 2,000원</td><td></td></tr><tr><td>파. 현수막 1) 현수막</td><td>-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td>3,000원 1,000원</td><td></td></tr></table>	광고물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신설)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table><tr><th>광고물등의 종류</th><th>기준</th><th>수수료</th><th>비고</th></tr><tr><td>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td><td>-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td><td>400,000원 10,000원 2,000원</td><td></td></tr><tr><td>파.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td><td>-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td>3,000원 1,000원</td><td></td></tr></table>	광고물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광고물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신설)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광고물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 <u>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u>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2만원
- 0.5㎡ 이하			17만원
- 0.6㎡ 이상 0.8㎡ 이하			25만원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33만원
- 1.4㎡ 이상 1.6㎡ 이하			42만원
- 1.7㎡ 이상 2.0㎡ 미만			58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67만원
- 2.4㎡ 이상 2.6㎡ 이하			92만원
- 2.7㎡ 이상 3.0㎡ 미만			117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가산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130만원에 3 제곱미터 초 과면적의 0.5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 산한 금액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7만원
- 0.6㎡ 이상 0.8㎡ 이하			10만원
- 0.9㎡ 이상 1.0㎡ 미만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7만원
- 1.4㎡ 이상 1.6㎡ 이하			25만원
- 1.7㎡ 이상 2.0㎡ 미만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50만원
- 2.4㎡ 이상 2.6㎡ 이하			58만원
- 2.7㎡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에 3제 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 곱미터당 8만 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가산금액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 <u>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 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 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u>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개당 12만원
- 0.5㎡ 이하			개당 17만원
- 0.6㎡ 이상 0.8㎡ 이하			개당 25만원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개당 35만원
- 1.4㎡ 이상 1.6㎡ 이하			개당 42만원
- 1.7㎡ 이상 2.0㎡ 미만			개당 58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개당 67만원
- 2.4㎡ 이상 2.6㎡ 이하			개당 92만원
- 2.7㎡ 이상 3.0㎡ 미만			개당 117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에 3 제곱미터 초 과면적의 0.5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 산한 금액	개당 130만원+가산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개당 7만원
- 0.6㎡ 이상 0.8㎡ 이하			개당 10만원
- 0.9㎡ 이상 1.0㎡ 미만			개당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당 17만원
- 1.4㎡ 이상 1.6㎡ 이하			개당 25만원
- 1.7㎡ 이상 2.0㎡ 미만			개당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개당 50만원
- 2.4㎡ 이상 2.6㎡ 이하			개당 58만원
- 2.7㎡ 이상 3.0㎡ 미만			개당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에 3제 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 곱미터당 8만 원을 가산한 금액	개당 80만원+가산금액

나. 현수막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3만원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3만원	
- 1.0㎡ 이하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7만원 22만원 25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장당 17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 3.0㎡ 이상 3.7㎡ 이하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33만원 50만원 58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35만원 장당 50만원 장당 58만원	
- 5.0㎡ 이상 6.0㎡ 이하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에 10 제곱미터 초 과면적의 1제 곱미터당 15 만원을 가산 한 금액	80만원+ 가산금액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에 10 제곱미터 초 과면적의 1제 곱미터당 15 만원을 가산 한 금액	장당 80만원+가산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8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8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장당 8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장당 8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21장 이상			
라. 전단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5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5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장당 5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장당 5천원 이하 ·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21장 이상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 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 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삭 제)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 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기 간	
장 소	()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점검 -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 사업계획서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기간 :	
장소 :	
	

- 현 수 막 : 가로 10센티미터 X 세로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가로 5센티미터 X 세로 3.5센티미터 이내

※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점검 -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 사업계획서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	---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 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	---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 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사자 소속		년 월 일
성명		직위 (직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육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 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육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육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 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검사자 소속		년 월 일
성명		직위 (직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육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 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육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육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 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육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육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